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서류 준비 가이드

본 가이드에 포함된 서류는 형식 참고용 예시로
세부사항은 신청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차] 가이드 순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신청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출 서류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01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 소상공인 여부, 지원가능 업종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목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제출생략

02

신청서류 (1차)

✓ 유상임대 여부, 건축물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목록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아래 서류는 해당 시 추가제출

- 영업신고증(전용 면적 불분명한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신청이 아닌 경우)



03

정산서류 (2차)

✓ 철거비용 및 공사완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목록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대금완납 확인증
- 철거 전-후가 나타난 점포 내·외부 사진

직접제출

01

신청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공공마이데이터]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5종 설명

꼭 확인하세요!

-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급 가능한 서류는 총 5종이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 시
본 서류들은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 아래 신청인의 경우,
마이데이터 이용 불가능
 - 타인신청 (대표자 사망 등)
 - 공동대표(부대표) 신청
 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동의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신고내역 확인

- ✓ 개·폐업일, 제한업종 등 확인
 - * 신청인은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업체명, 주소 등을 신청화면에 동일하게 입력
 - * 폐업사실증명원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해야 함

매출액 확인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업종별로 매출 상한이 다름 (본 가이드 [붙임1]소상공인 기준 참고)

상시근로자 사용 여부 확인

- ✓ 최근 12개월간 상시근로자가 있었는지 확인
 - * 상시근로자 존재하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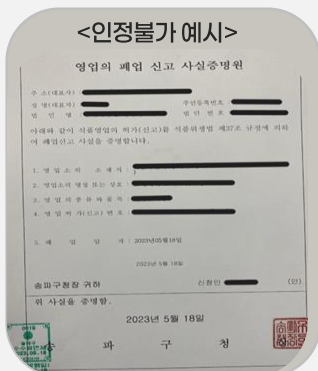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꼭 확인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을 통해
 - 영업일수(60일 이상)
 - 3년 이내 폐업 여부
 - 지원 제외업종 해당 여부*
 -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은 본 가이드 [붙임2] 참고
-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 제출
- ✓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 폐업신고 접수증 등 인정 불가



01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지 확인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폐업예정자)사업자등록
증명원 상 개업일~신청일

02

기 폐업자의 경우 '3년 이내' 폐업자인지 확인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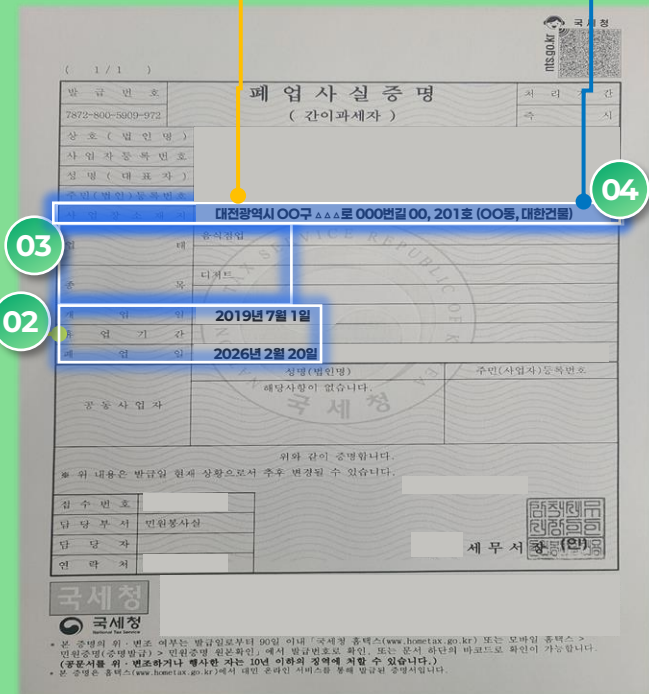
03

본 사업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

(도박 및 사행성, 유흥업종 등)

0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폐업사실증명원 소재지 일치여부 확인



[공공마이데이터] 매출액 서류

꼭 확인하세요!

- ✓ **매출액 서류는 과세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간이)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참고사항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은 본 가이드
[붙임4] 평균 매출액 산정 참고

01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에 부합하여야 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는 업종별로 상이하며, **본 가이드 [붙임4] 참고**
 (예) 숙박 및 음식점업: 15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60억 이하 / 제조업: 120억 이하

발급번호 T445-221-4875-26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처리기관 국세청
성명		주면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			
(단위 :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부터	까지		
2023/01/01	2023/12/31	반기별로 신고한 매출액이 나타남	
2024/01/01	2024/12/31		
2025/01/01	2025/12/31		
== 이하 여백 ==			
국세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일괄일련 작성으로서는 수정 변경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6일	
		의정부세무서장	

국세청
National Tax Authority of Korea

- 본 증명은 국세청 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전자·원단·복합도 등 원본을 주당사자(법인, 장외영업대표를 포함한 법인 또는 조세비밀유지대상인 법인)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복사한 자는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다.(공문을 위한 복제본 제외)
- 본 증명은 세무사·회계법인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 통째로 및 기타를 주민센터(여타서나 민관)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 · 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처리기간	
발급번호					쪽 수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세 타 소		
사 업 장						
					(단위 : 원)	
과 세 기 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할 세금 (환급받을 세금)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23/01/01	2023/12/31	연 매출액이 나타남				
2024/01/01	2024/12/31					
2025/01/01	2025/12/31					
		아 라	여 백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 수 번 호		2026년 1월 28일				
담 당 부 서		정읍세무서장				
담 당 자						
연 락 처						

* 본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전자발급원인 항목에 전자발행인인 것으로 하며, 각 해당 항목은 2026.01.01~2026.12.31까지 유효하며, 분기별 납금으로도 90일간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꼭 확인하세요!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최근 1년간의 이력(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 참고사항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본 가이드 [붙임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참고

01

직장가입자로 신청인 사업장명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서류 징구 요청

발급번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지역세대주			
2	직장피부양자			
3	지역세대주			
4	직장피부양자			
5	지역세대주			
6	직장가입자			

이하야역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0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 하 야 역

신청인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있는지 확인

직전 사업연도 (최근 1년간) 확인

이 확인서의 취득일·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사일·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재직증명용,경력증명용,대출용 등)로 사용시 공단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직접 제출(택1)
-> 반드시 직전년도 12개월 분 (12장) 모두 제출
-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③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매월	연가	수정	영합	소액	세액	환급	환급	세액	환급	환급	환급
월간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구분	신고구분	신고구분	신고구분	신고구분	신고구분	신고구분
②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속지	소속구분	고용	원천징수 명세				납부세액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소득지
			① 인건	② 공적금	③ 소득세	④ 봉급세	⑤ 가세	⑥ 소득세	⑦ 소득세	⑧ 소득세	⑨ 소득세
근로	간이직	401									
	중도퇴사	402									
	불응근로	403									
	합계	404									
	본인신용	405									
	납부금의	406									
기타	기타	407									
	기타	408									

02

신청 서류 (직접제출)



[직접제출]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점포 주소, 면적, 유상임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 점포의 '면적' 확인 후 최대 지원한도를 판정하고, 소재지·유상임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사업장 면적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영업신고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서 인정됩니다

01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일치 여부 확인

(동, 호수, 층수 등 모두 일치해야 함)
* 신청화면(온라인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입력

02

전용면적 확인(임대할 부분)

※ 신청서에 면적 입력 시 반드시 m² 단위 기재
평단위로 자동 환산됨

03

유상임대 여부 확인

☞ 무상임대 또는 자가건물 지원 불가

부 동 산 임 대 차 계 약 서

☐ 전세 ☒ 월세

임차인 생략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표시

01 소재지 (대전광역시 00구 △△△로 000번길 00, 201호 (○○동, 대한건물))

02 지 목 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12.17㎡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구조물도 형 근 근 크 리 트 구 조 면 적 346㎡ 임대할부분 201호 면 적 20㎡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오백만원정	원정 (₩ 5,000,000)
계 약 금	금 일백만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홍 길 동)
종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전 금	금 사백만원정	은 2024년 2월 20일에 지급한다.
	금 육십만원정	은 (선불)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 2 조 (임대인)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2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임차보증금 및 전대금, 차임)은 임차인이 계약당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납입하거나 은행에서 발행한 임대차차관 영수증 또는 임대보증금 영수증, 무통장 임대차, 목적·내역이 유동으로 사용함. 스. 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정마다 간인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직인 필수
대리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직인 필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대리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등록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직접제출]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아래 정보들은 반드시 가리고
제출해야합니다

<가려야 할 부분>

- 임대인 및 중개인 정보
- 임차인(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타내야 할 부분>

- 임차인(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 계약자 간 직인(또는 서명)

04

**임대인 및
중개인 정보는 가림처리**

05

임차인(신청인)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임차인·임대인 간 직인(또는 서명)만 남기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04 ☑ ☐ ☐ 전 세 월 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대전광역시 OO구 △△△로 000번길 00, 201호 (OO동, 대한건물)					
토 지	지 목 대	(대지권의 토지의) 면적		124.7㎡	대지권 종 류	대지권 비 율	
건 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	346	
임대료부분		201호			면적	20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오백만원정			원정 (₩ 5,000,000)			
계 약 금	금 일백만원정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처 (홍 길 동 ☎)			
종 도 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전 금	금 사백만원정			은 2024년 2월 20일에 지급한다.			
차 임	금 육십만원정			은 (선불)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 2 조 (조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2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영도보증 및 견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거나, 무허가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계약증인중계사는 매달마다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	주 소	가림처리			05 자 인 필수		
대	주인등록번호				자 인 필수		
인	대리인				자 인 필수		
임	주 소				자 인 필수		
자	주인등록번호	850407	가림처리			성 명 홍길동	
인	대리인	주 소	주인등록번호			성 명	
법	사무소소재지						
정	사무소명칭						
공	대 표						
인	등 록 번 호						
중	소속공인중개사						

[직접제출] 건축물대장

꼭 확인하세요!

- ✓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보조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면적 확인

- ✓ 해당 건물이 '주거용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됩니다
* 단, 영업신고증 및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 전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참고사항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전유부' 를 제출해주세요

01

점포 용도 확인

: 신청인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층수를 확인하고 용도 확인

*단, 주거용도(주택 등)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불가

02

면적 적정성 검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일반건축물대장(갑)

(2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가구/0세대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210-14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0㎡		653.1㎡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141.3㎡		563.04㎡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	
0%		0%		m		슬라브	
※조경면적		※공개 공간·공간 면적		※건축선후퇴 면적		※건축선후퇴 거리	
㎡		㎡		㎡		m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통산통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변동원인
주1	지1	철근콘크리트조	01					2019.8.5.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0.76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40.76		- 이하여백 -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40.76		※이 건축물대장은 현소유자만 표시한 것입니다.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03

정산 서류 (2차)



[직접제출] 공사내역서

꼭 확인하세요!

✓ 공사내역서는
철거업체(공급자)가 발행한
서류인지 확인 가능해야 하며
(직인 또는 사인이 나타나야 함)

공사 세부내역 및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사항

프랜차이즈 '본사'가 견적을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신청인이 아니어도
유효 서류로 인정

NO. 제 2025-01호

견 적 서

2025 년 2 월 15 일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귀하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등록번호	000-00-000000		
상호(법인명)	원거용	성명	원거용
사업장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000번길 00, 0층(00동 00번동)		
업태	건설업	종목	건물 및 구조물 해체
전화번호	042-000-0000		

(공급가액+세액) 금 일백구십삼만육천원 1,936,000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대부 시설 철거	-	-	300,000	3	0	0	0	3	0	0	0
바닥 원상복구	-	-	500,000	5	0	0	0	5	0	0	0
간판 철거	-	-	100,000	1	0	0	0	1	0	0	0
주방 철거	-	-	30,000	3	0	0	0	3	0	0	0
유리 교체	1	1	60,000	6	0	0	0	6	0	0	0
계				17	6	0	0	17	6	0	0

※ 본 견적서는 사업자가 원할때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거래시마다 사용하는 계산서이며 원할때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01

철거업체 정보 확인
(철거업체 정보가 없는 수기 견적서 인정 불가)

※ 서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철거업체 대표자의 직인 또는 사인 필요

02

총 공사비 확인
(견적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 '합산 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총 금액'과 일치해야 함)

※ 단, 신청화면에 '신청금액'을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함

03

세부 공사 수행내역 확인

[직접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꼭 확인하세요!

- ✓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에 정상 신고된 거래인지,
합계금액이 견적서 및 이체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 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의 **금액 불일치**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 기 폐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
- 프랜차이즈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하는 자) 본사 → (공급받는 자)신청인으로
발행하여도 인정 가능

01

발급내역 확인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등이 한 장에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유의사항①

종이(수기)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 세무서 직인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통지서 제출해야 인정여부 검토 가능

※ 유의사항②

공급받는 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으로
표기 되어야함

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수령인(구매)			
등록번호			종사업장 번호	등록번호			총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성명	상호 (법인명)			성명
사업장				사업장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 유인 공급 표기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25/03/31	1,800,000	18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3	31	철거및폐기물처리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1,980,000

공사내역서 = 전자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금액은
동일해야 함**

[직접제출] 이체확인증

꼭 확인하세요!

- ✓ 이체확인증을 통해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 금액을 실제 '완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 이체확인증은 은행별로 서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며
은행 창구에서 발행하는 종이 스캔본, 은행 어플 캡처 화면 모두 인정됩니다

※ 유의사항

점포철거비는 이체내역 전액이 아닌 '공급가액' 만 지원 가능 (VAT 제외)

이체확인서

○○ 은행	
거래구분	즉시이체
이체일시	01 2026-05-20 13:36
출금계좌	000-000000-000
입금계좌	홍길동(철거업체명) 000-000000-000 □□은행
이체금액	02 1,980,000
수수료	면제
나에게 표기	03 적요, 메모 부분으로 인정불가
받는분에게 표기	적요, 메모 부분으로 인정불가

- 상기 내용과 같이 이체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이체확인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1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이름(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모두 확인

* 수취인이 철거업체(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02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금액 동일해야 함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이체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보다 이체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국세신고 누락으로 간주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03

적요, 메모 부분은 송금인이 수정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하지 않음

[직접제출] 카드전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꼭 확인하세요!

- ✓ 카드로 철거비용을 결제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이며 카드사마다 서류 명칭과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체확인증과 마찬가지로 카드 대금 '완납'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

점포철거비는 이체내역 전액이 아닌 '공급가액' 만 지원 가능 (VAT 제외)

01

카드사 이름
000-0000-****-0000

거래일시
2026-01-20 13:31

금 액
1,800,000원

부가세
180,000원

합 계
1,980,000원

승인번호
00000000

매입시명 [009-DESC]
00카드

가맹점/사업자
000000/ 000-00-00000

철거업체 대표자명
철거업체명

철거업체 주소

알림 전자서명전표임

기타정보

02

결제금액, 결제일시, 철거업체 정보, 카드사명, 카드번호 모두 확인

* 가맹점이 철거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완 납 확 인 서

안녕하세요 ○○카드입니다.

01

카드정보 및
카드 소유주 정보(본인카드)

본인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인지 확인

회 원 명 :
주 민 번 호 :
카 드 번 호 :

다 용

환납내역
환 기 준 일 : 2026-05-20 현재

환납일자	입금명	기업입금	환납계좌	잔액	입금일자	입금금액
2026-01-20	환부	철거업체명	3			

고객님은 2026-05-20 기준, 상기 매출을 모두 완납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카드

카드사 로고

03

공사내역서 = 카드결제액이 동일해야 하며 카드대금은 모두 완납한 것이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결제해야 함

[직접입력] 지원금 수령계좌

꼭 확인하세요!

- ✓ 지원금을 지급 받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 ✓ 계좌인증을 통해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

점포철거비 지급요청서

* 실행완료일	____-____-____	* 철거업체명	_____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_	* 철거업체 대표자명	_____
* 지급요청 계좌	☐ 본인계좌 ☒ 타인계좌(가족) ※압류(방지)등장, 해약계좌 등 잘못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제지급 불가)		
* 은행명	--선택--	* 예금주명	_____
		* 계좌번호	____-____-____ '-' 없이 입력
			계좌인증

※ 유의사항

신청인 **본인 결제(철거비)** - **본인 수령(지원금)**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통장을 압류당한 경우 등)
가족(배우자 등)에 한하여 지원금 수령 가능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5] 직접 작성
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별지6] 직접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7] 직접 작성
5	신용평가보고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명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소상공인24→공단 지원사업소개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하단 첨부파일 참고

[직접제출] 철거 전·후 사진

꼭 확인하세요!

- ✓ 철거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제출합니다
외부 간판 미철거 시 실행내용에 '간판 미철거' 내용 기재
SI로 수정(조작)된 사진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 사업장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세요
(내부) 공사 전/후 변경사항 확인
(외부) 공사 전/후 변경사항 확인
- ✓ 공사 내역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위치, 동일각도' 전경 사진 촬영을 권장합니다.

※ 참고사항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철거 여부 최종 확인



위 이미지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04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가 여러 개인데, 폐업하는 점포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본 사업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생애 1회)
폐업하고자 하는 점포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대표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Q3. 지원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A3. 모집공고 및 업무편람 뒤쪽에 있는 ‘지원제외 업종’ 목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유흥.사행성, 도박, 성인용품, 휴게텔, 전문업(약국, 감정평가업, 회계 등), 부동산업’ 등이 해당됩니다.

Q4.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4. 정산서류 검토완료 이후 2~3주 내 지급되나, 신청 건이 많은 경우 최대 3~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등으로 신청자마다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5.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선지급이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해당 사업은 신청자가 철거비를 우선 부담한 뒤,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6.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6. 상시근로자 증빙서류는 반드시 직전년도 12개월 분(12장)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특성상 파일은 각 항목마다 1개씩만 제출 가능하므로
12장의 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이 없습니다.

A7.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자 간 서명** 또는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모든 계약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포함한 완전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8. 임대차계약서에 면적 정보가 없어서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한 점포의 면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만으로 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적 확인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올바른 면적을 기재한 후, 수정된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가설건축물이라 건축물대장이 발급 불가합니다. 지원 불가한가요?

A9. 네, **지원 불가**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로
본 사업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0. 3개월 할부로 철거비를 결제했습니다. 지금 신청 할 수 있나요?

A10. 카드 결제 시, 카드 대금의 '완납'이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 취소 가능성,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정부 예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11. 철거업체의 업종이 인테리어업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철거업체 선정 시 자격요건이 있나요?

A11. 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종(업태)로 인정되는 경우 자유롭게 선정 가능합니다. 단, '음식점업 등' 철거공사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Q12. 철거업체를 여러 곳 선정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12. 가능합니다. 단, 복수업체 이용 시 업체별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정산서류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철거업체 3곳과 거래한 경우

①공사내역서 각 업체별 3부, ②전자세금계산서 각 업체별 3부, ③이체확인증 업체별 각 3부를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Q13. 인테리어 철거 외 간판 철거만 하는 경우도 지원 되나요?

A13. 부분 철거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점포철거비 신청 1.2차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부분철거 전.후 사진 등 명확히 철거 사실이 입증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붙임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번호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 매출액 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가스, 증기, 냉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평균 매출액 등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번호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22	담배 제조업	C12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S94 제외)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중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클럽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설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설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설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접골 및 유사서비스업 (접골, 무당, 남침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원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1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중	일반유흥주점업
56212 중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택을 영위하는 경우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구분	포함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붙임3]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접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접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접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①>
창업·합병·분할로 직접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②>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예시 ③>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 ①	'22. 11. 20	'24. 6. 23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 ②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6월~'24년 5월
예시 ③	'24. 1. 20		(개업월최근) '24년 1월~'24년 5월

[붙임4] 평균 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접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접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예시 ①>
②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예시 ②>
③ 직접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③>
	나.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④>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예시 ⑤>

•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평균 매출액 산정기간
예시 ①	'20. 8. 20	'24. 6. 23	(직전 3개 사업연도) '21년 1월~'23년 12월
예시 ②	'21. 3. 5		(직전 2개 사업연도) '22년 1월~'23년 12월
예시 ③	'22. 3. 5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 ④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6월~'24년 5월
예시 ⑤	'24. 1. 20		(개업일 익월 최근) '24년 2월~'24년 5월

감사합니다.

